

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 주의보

차량용 블랙박스 ‘무료장착’ 빙자한 암체상술 주의!

-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-

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고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암체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.

■ 차량용 블랙박스 ‘무료장착’ 빙자 암체상술 피해 상담 급증

○ 전화권유(텔레마케팅)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암체상술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*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총 244건 접수됨.

* **1372 소비자상담센터(www.ccn.go.kr)** : 10개 소비자단체, 16개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

- 연도별로 살펴보면, 2012년 65건이던 상담 건수는 2013년 3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에 120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33.3%(84건) 증가하였고, 2015년 2월 말까지 23건이 접수됨.

<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>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(2.28)	계
건수 (전년대비 증감율)	65건	36건 (△44.6)	120건 (233.3)	23건	244건

■ ‘선불식 통화권 지급’, ‘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’ 상술 피해 많아

○ 2012. 1. 1.부터 2015. 2. 28.까지 무료장착을 빙자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상담 244건 중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,

- ‘선불식 통화권 지급’ 상술이 **83건(39.9%)**으로 가장 많음. 차량용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하여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이 연락이 두절됨.

- ‘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’ 상술은 **74건(35.6%)**이 접수됨.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이 가능하다며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지 조회해보겠다고 하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함.

- ‘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’ 상술은 **29건(13.9%)**임. 이동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상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함.

- ‘결제대금 환급·무료주유권 지급’ 상술은 **22건(10.6%)**으로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음.

현황
(배경/
내용)

< 무료장착 빙자 상술유형 현황 >

(단위 : 건, %)

유 형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(2.28)	계
선불식통화권 지급	11 (19.0)	7 (29.2)	52 (49.1)	13 (65.0)	83 (39.9)
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	36 (62.0)	14 (58.3)	21 (19.8)	3 (15.0)	74 (35.6)
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	-	1 (4.2)	26 (24.5)	2 (10.0)	29 (13.9)
결제대금 환급·무료주유권 지급	11 (19.0)	2 (8.3)	7 (6.6)	2 (10.0)	22 (10.6)
계	58 (100.0)	24 (100.0)	106 (100.0)	20 (100.0)	208 (100.0)

▣ **결제금액은 '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'이 가장 많아**

- 피해 상담 244건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,
 - '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'이 99건(50.5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100만 원 미만' 79건(40.3%), '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' 9건(4.6%) 등의 순임.

< 결제금액 현황 >

(단위 : 건, %)

결제금액	100만 원 미만	100만 원 이상 ~100만 원 미만	200만 원 이상 ~300만 원 미만	300만 원 이상 ~400만 원 미만	400만 원 이상	계
건수 (비율)	79 (40.3)	99 (50.5)	9 (4.6)	7 (3.6)	2 (1.0)	196 (100.0)

▣ **'방문판매'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**

- 판매방법을 분석한 결과, '방문판매'가 143건(58.6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 해주겠다고 유인한 '전화권유 판매' 80건(32.8%), '노상판매' 21건(8.6%)임.

< 판매방법 현황 >

(단위 : 건, %)

판매방법	방문판매	전화권유 판매	노상판매	계
건수 (비율)	143 (58.6)	80 (32.8)	21 (8.6)	244 (100.0)

▣ **피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**

-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의 거주 지역을 보면, '수도권'이 121건(49.6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중부권' 50건(20.5%), '영남권' 46건(18.9%), '호남권' 27건(11.0%) 순임.

< 소비자거주 지역 현황 >

(단위 : 건, %)

지역	수도권	중부권	영남권	호남권	계
건수	121	50	46	27	244
(비율)	(49.6)	(20.5)	(18.9)	(11.0)	(100.0)

* 지역별 구분 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영남권(부산·울산·경남·경북·대구), 중부권(충남·충북·대전·강원), 호남권(전남·전북·광주)

소비자
피해사례

[사례 1] 선불식 통화권 제공

- 김모씨(남, 50대, 서울시)는 2014. 11. 30. 방문판매사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80만 원을 결제하면 이동통신 선불식 통화권 19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, 통화권을 주지 않음.

[사례 2]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

- 김모씨(남, 50대, 경기도 평택시)는 2015. 1. 13. 용인 휴게소에서 판매원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○○화물복지카드에 하이세이브를 신청하면 포인트가 추가 적립되고 적립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도 구입할 수 있어 무료나 다름없다고 함.
- 판매사원은 하이세이브 신청을 위해 카드조회를 해보아야 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용카드를 준 사실이 있는데, 이후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블랙박스 대금으로 10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.

[사례 3]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권유

- 박모씨(남, 60대, 고양시)는 2014. 10. 방문판매사원이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하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장착 해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건네줌.
- 이후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블랙박스 대금이 월 9만 원씩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됨.

[사례 3] 무료주유권 지급

- 이모씨(남, 60대, 수원시)는 2014. 1. 방문판매사원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준다고 하여 동의함.
- 블랙박스를 장착하자 말을 바꿔 대금 192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4년간 분기별로 24만 원씩 무료주유권을 준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.

소비자
주의사항
(방안)

▣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.

-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기억하고 방문 또는 전화권유(텔레마케팅)를 통해 무료로 준다는 상술에 속지 않는다.
- 영업사원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 후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.

▣ 방문판매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.

- 계약서에 방문판매업 신고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, 사업장 소재지,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계약서에 전화번호(특히 휴대폰 번호), 상호만 있는 판매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연락 두절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다.
- 방문판매사업자 신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www.ftc.go.kr) 또는 판매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시·구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.

	<p>▣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계약조건, 청약철회 조건, 계약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“언제든지 해약가능”등의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 <p>▣ 신용카드번호, 비밀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임의로 결제할 수 있으므로 구입 의사가 없다면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. <p>▣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.
--	---

<p>피해발생 문의처</p>	<p>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, 한국소비자원(www.kca.go.kr/ 팩스 : 043-877-6767)</p>
-----------------	---

	<p>담당자 : 피해구제국 자동차팀 팀장 김현윤 TEL. 043-880-5781 / 차장 김선환 TEL. 043-880-5782</p>
---	--